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출자료 비공개〉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24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만 · 이인영 · 강준현 · 박상혁 · 천하람 · 조승래
이정문 · 염태영 · 천준호 · 민병덕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 의안번호 : 68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인의 보호 규정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

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
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
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
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제출하는 서류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제출자료의 비공개) 국가기관 등이 제출하는 서류등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¹⁾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²⁾은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를 받은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³⁾

[표-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증언·서류등 제출의무 예외 사유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로서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
2.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본인 또는 친족 등의 형사책임과 관계된 증언, 감정 또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3.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그런데,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실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를 근거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한 증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 ② 증인·참고인의 방송·보도 금지 또는 회의 비공개 요구, ③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⁴⁾ 제

3) 법제처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으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해석함[국회가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14-0411].

출된 서류등과 관련한 보호규정은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제출하는 서류등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보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를 이유로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제출을 유도하는 한편,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 권한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정보보호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 허용되는 공개된 회의에서 증언·진술을 하는 증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보도 금지 또는 회의 비공개 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등을 보호하도록 하면, 서류등이 회의에서 시청각자료로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서류등에 포함된 내용이 회의 중 의원의 발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등에는 서류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보이나,

서류등이 회의가 아닌 언론보도·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에는, 회의 비공개로는 서류등의 공개를 막을 수 없고 「국회법」상 회의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의 허용 권한이 의장·위원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⁵⁾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서류등에 대한 방송·보도 금지를 실제로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방송·보도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5) 「국회법」 제149조의2에 따르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음.

「국회법」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